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0.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총 무 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명서

설명자: 총무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정 면적 또는 금액 이하의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8조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대부분 요율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30조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매각대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고,

- 안 제31조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 면적 산출산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안 제32조제6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을 반영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대부료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19. 11. 11.부터 12. 2.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20. 1. 10.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82007
----------	---------

제출년월일: 2020. 1. 23.  
제출자: 달서구청장  
(총무과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18. 12. 4.) 반영

-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2조제6항)

### 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 정비

- 330m<sup>2</sup>이하(5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 삭제(안 제5조)
- 상위법령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 조항 삭제(안 제28조)
-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토석 매각 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안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별표3)의 개정에 따라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선(안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 규정에 맞게 수정  
(안 제4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4)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및 제16조제2항제1호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9. 11. 11. ~ 12. 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여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5)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정에 관하여”를 “지정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작성 · 비치하여야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하여야야”를 “도모하여야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른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하여야야”를 “도모하여야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허가시”를 “허가할 때”로 한다.

제21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 중 “대한 기여실적”을 “이바지한 실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저촉되어”를 “어긋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의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2조제1호사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바목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 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5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기타관사”를 “그 밖의 관사”로 한다.

제5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한다.

제54조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비치정리한다”를 “갖추어 두고 정리 한다”로 한다.

제58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에 <u>의한</u>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u>지정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따른</u> ----- ----- <u>지정</u> <u>에</u> ----- ----</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u>의하여</u>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따라</u> ----- ----- ----- ----- -----.</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p> <p>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u>으로 한다.</p> <p>⑤ (생 략)</p> <p>⑥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u>작성·비치하여야</u> 하며,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임기의 남은 기간</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u> ----- ----- -----.</p>





제17조에 의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생 략)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 따르고 -----  
-----  
-----  
-----  
---.

제19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

-----  
-----  
-----  
-----  
-----  
-- 허가할 때-----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 --  
-----  
----- 갖추  
어 두고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라 -----  
-----  
----- 영 제21  
조의 -----  
-----  
-----



조치) ① 대부분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 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치) ① -----  
-----  
-----게을리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어긋나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 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재산

### 3. ~ 8. (생 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채취물 가격을 결정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취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

### 3. ~ 8.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28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의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산비 등을 고려하여 연1천분  
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그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  
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 행과 같음)

(2) 따른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  
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  
용면적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 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 가액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

## 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서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

-----  
-----  
공용

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경우는 대부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생략)

⑥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 ⑥ <삭 제>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  
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  
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  
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  
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  
하여 산출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 바. (생 략)

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  
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  
설하는 경우

아. ~ 마. (생 략)

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The image shows a set of handwriting practice lines. It consists of five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lines. Each set includ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line, and a solid bottom line. The sets are evenly spaced vertically across the page.

가. ~ 바. (현행과 같음)

1. 사. -----

따라

아. ~ 마. (현행과 같음)

2. 바. -----  
-----  
-----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 마. (생 략)

3.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사. · 아. (생 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 ⑤ (생 략)

<신 설>

----- 따라 -----

사. ~ 마. (현행과 같음)

3. 바. -----

----- 따라 -----

사. · 아.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  
-----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  
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  
호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  
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  
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

## 료의 100분의 5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  
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  
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  
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  
다.

②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생 략)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  
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그 밖의 -----  
-----  
-----  
-----  
-----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 갖추어 두어야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 4. ~ 6. 삭 제

## 7. ~ 9. (생략)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② · ③ (생략)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 7. ~ 9.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  
따라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정의) -----  
-----  
- 그 밖의 -----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
1. · 2. (생략) 3. 3급 관사 : 시설관리에 필요 한 관사, <u>기타관사</u> 등	1. · 2. (현행과 같음) 3. ----- -- <u>그 밖의 관사</u>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u>의하여</u>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u>요하지</u> 아니한다.	제52조(사용허가) ----- ----- <u>따라</u> -----. ----- <u>필요로 하지</u> -----.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u>기하기</u>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u>비치정리</u> 한다.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 ----- <u>도모하기</u> ----- ----- ----- ----- ----- <u>갖추어 두고 정리</u> <u>한다</u>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u>비치하고</u> ,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 ----- ----- <u>갖추어 두고</u> ----- ----- -----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u>의한</u>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u>따른</u> -----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아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 2. (생략)

## ② ~ ④ (생 략)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한다.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

따라

## (관 계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사용 · 수익허가의 방법)

- ① (생략)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1. ~ 20. (생략)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시행일: 2019. 6. 5.] 제13조제3항제21호, 제13조제3항제22호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시행일 : 2019. 6. 5.] 제17조제7항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 24. (생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시행일 : 2019. 6. 5.] 제29조제1항제20호, 제29조제1항제25호

###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1.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12. 26.>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 산지관리법

###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별표 3)

### ○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 \\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underline{\text{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